

제2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에 따라 제2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 순천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유치에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9. 3. 22. ~ 3. 2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3월 27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owoon@korea.kr

2) 주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3) 팩스 : 061-749-477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3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3. 21.

1. 개정이유

- 순천시 노인복지관 3개소의 명칭이 종합복지관과 혼동이 되고 있어 관할구역 및 목적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코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 제1호 중 “순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순천시 용당노인복지관”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순천시 동부종합복지관”을 “순천시 동부노인복지관”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순천시 남부종합복지관”을 “순천시 남부노인복지관”으로 한다.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2. 15. ~ 3. 7.)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1. 25.(여성가족과-175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1. 25.(기획예산실-109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2. 15.(순천시 공고 제2019-208호)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순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순천시 용당노인복지관”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순천시 동부종합복지관”을 “순천시 동부노인복지관”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순천시 남부종합복지관”을 “순천시 남부노인복지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명칭 및 위치) 순천시 노인복지관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순천시 <u>노인종합복지관</u> : (생략) 2. 순천시 <u>동부종합복지관</u> : (생략) 3. 순천시 <u>남부종합복지관</u> : (생략)	제2조(명칭 및 위치) ----- ----- -----. 1. 순천시 <u>용당노인복지관</u> : (현행과 같음) 2. 순천시 <u>동부노인복지관</u> : (현행과 같음) 3. 순천시 <u>남부노인복지관</u> : (현행과 같음)

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34호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3. 21.

1. 개정이유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이 “성별영향평가법” 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순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 를 “성별영향평가” 로 용어 정리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임기(안 제11조 ~ 제12조)
- 위원장의 직무(안 제13조)
- 위원회의 운영(안 제14조)
- 위원의 해촉, 수당(안 제15조 ~ 제16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성별영향평가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 10. 31. ~ 11. 20.)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10. 30.(성별영향평가시스템)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 10. 26.(전략기획과-1195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 10. 31.(순천시 공고 제2018-1698호)

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순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를 “평가”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4조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5조 제목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단위사업”을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6조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 본문, 같은 조 제3호, 같은 조 제4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7조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단위사업”을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한다.

제8조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한다.

제9조 제목 및 본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0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1조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제12조부터 제14조를 각각 제17조부터 제19조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중전의 제12조) 제목 및 각 호 외 본문 중 “분석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

한 사항”을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 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13조”를 “제18조”로,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8조(중전의 제13조) 제목 및 본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중전의 제14조)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성별영향분석평가법</u> 」에 따라 순천시의 정책에 대한 <u>성별영향분석평가</u>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성별영향평가법</u> 」----- ----- <u>성별영향평가</u>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u>성별영향분석평가</u> ” (이하 “ <u>분석평가</u> ” 라 한다)란 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u>분석·평가</u> 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생략)	제2조(정의) ----- -----. 1. “ <u>성별영향평가</u> ” ----- ----- ----- <u>평가</u> ----- -----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 ② 시장은 <u>분석평가</u>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u>분석평가</u>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u>성별영향평가</u> ----- ----- -----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u>분석평가</u> 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u>성별영향평가</u> ----- -----.
제5조(<u>분석평가</u> 대상) ① 시장은「 <u>성별영향분석평가법</u> 」(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u>분석평가</u> 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 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5조(<u>성별영향평가</u> 대상) ① -----「 <u>성별영향평가법</u> 」----- ----- <u>성별영향평가</u> ----- ----- -----

현행	개정안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 2. (생략)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u>단위사업</u> 4. (생략) ② (생략) 1. ~ 3. (생략)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u>분석평가</u>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u>분석평가</u>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u>분석평가</u>를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u>분석평가</u>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u>분석평가</u>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u>분석평가</u>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u>분석평가</u>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생략) 2.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u>단위사업</u> : 세출예산안의 순천시의회 제출 전 3. (생략) 제8조(<u>분석평가서</u>의 작성) 시장이 법 제8조에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u>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u>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 <u>성별영향평가</u> -- ----- ----- 제6조(<u>성별영향평가</u>의 고려사항)----- ----- <u>성별영향평가</u>-----. 1. ~ 2. (현행과 같음) 3. <u>성별영향평가</u> ----- 4. --- <u>성별영향평가</u> ----- ----- 제7조(<u>성별영향평가</u>의 시기)----- ----- <u>성별영향평가</u> ----- ----- -----. 1. (현행과 같음) 2. ----- <u>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u> : ----- ----- 3. (생략) 제8조(<u>성별영향평가서</u>의 작성) -----

현행	개정안
따라 작성하는 <u>분석평가서</u>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제9조(<u>분석평가결과의 반영</u>) 시장은 <u>분석평가</u>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u>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등 반영</u>)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 <u>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u>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1조(<u>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u>) ① 시장은 <u>분석평가</u>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u>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역할과 기능은 「순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에 따른 순천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u>분석평가</u>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u>분석평가결과</u>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u><신설></u> 3. (생략) <u><신설></u>	----- <u>성별영향평가서</u> ----- -----.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u>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u>) -- <u>성별영향평가</u> ----- ----- -----. 제10조(<u>특정성별영향평가 등 반영</u>) ① ----- ----- <u>특정성별영향평가</u>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u>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u>) ① --- <u>성별영향평가</u> ----- ----- <u>성별영향평가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 1. ----- <u>성별영향평가</u> ----- ----- 2. <u>성별영향평가</u>----- 3. <u>성별영향평가 결과</u>와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2조(<u>위원회 구성 및 임기</u>)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현행	개정안
	<u>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u>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u>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 <u>1. 순천시의회 의원</u> <u>2.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u>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u>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 <u>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 <u>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u> <u>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이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u>

<신 설>

<신 설>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신 설〉</u> <u>제12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u> 시장은 해당 기관의 <u>분석평가</u>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민복지국장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할 <u>분석평가책임관</u>으로 지정한다. 1. (생략)	<u>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u>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 <u>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 <u>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 1. <u>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u> 2. <u>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 3. <u>품위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u> <u>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u> <u>제17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u> ----- <u>성별영향평가</u> ----- ----- ----- <u>성별영향평가책임관</u> ----- ----- 1.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u>분석평가</u>의 시기 및 <u>분석평가서</u>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u>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u> 4. (생략) 5. 제13조에 따른 <u>분석평가 교육</u>에 관한 사항 6. (생략) 7. 그 밖에 <u>분석평가</u>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u>분석평가</u>에 관한 사항 제13조(<u>분석평가 교육</u>) 시장은 <u>분석평가</u>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u>분석평가 교육</u>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시장은 <u>분석평가</u>에 대하여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 시민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2. ----- <u>성별영향평가</u> --- <u>성별영향평가서</u> ----- 3. ----- <u>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u> 4. (현행과 같음) 5. 제18조 -- <u>성별영향평가</u> ----- 6. (현행과 같음) 7. --- <u>성별영향평가</u> ----- ----- <u>성별영향평가</u> ----- 제18조(<u>성별영향평가 교육</u>) -- <u>성별영향평가</u> ----- ----- <u>성별영향평가</u> ----- <u>하여야 한다.</u> 제19조(포상) --- <u>성별영향평가</u> ----- ----- ----- -----.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35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3. 21.

1. 개정이유

-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순천시 양성평등 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를 「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11조에 의거 ‘순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이임에 대한 내용을 정비

2. 주요내용

-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6조) 개정
 - 양성평등위원회의 성별영향분석평가 항목 삭제(제6조 제2항)
- 위원회 구성(제17조) 개정
 - 제7조 제3항 직제 개편에 따른 명칭 정비(민원복지국→시민복지국)
- 분과위원회(제8조) 개정
 -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 삭제
- 회의(제12조) 개정
 - 양성평등 위원회의 역할 분리에 따른 정기회 소집 횟수 정비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2. 15. ~ 3. 7.)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1. 29.(성별영향평가시스템)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1. 31.(기획예산실-134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2. 15.(순천시 공고 제2019-1232호)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민원복지국장” 을 “시민복지국장” 으로 한다.

제8조 중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분과위원회를” 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연 2회” 를 “연 1회”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생략) 1.~ 6. (생략) ② 위원회는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여성과 남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u>성별영향분석평가</u> 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6.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u>민원복지국장</u>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생략)	제7조(위원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시민복지국장</u> ----- ----- ----- -----.
제8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u>성별영향분석평가</u> 등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 ----- <u>위하여 분과</u> <u>위원회를</u> ----- -----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u>연 2회</u>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2조(회의) ① ----- ----- <u>연 1회</u> ----- ----- -----.

순천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928호
----------	--------

○ 발의연월일 : 2019. 3. 19.

○ 발 의 자 : 이현재, 이복남,
허유인 의원

1. 제정이유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여행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철학, 가치, 지향을 분명히 하고자 기본이념을 제시함
(안 제2조)
-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순천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 시설의 범위와 설치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 제8조)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명시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제47조의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관광 활동의 차별금지)

5. 예산상황 : 해당 없음

순천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제47조의4, 제47조의5에 따라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여행기회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장애인 등 관광약자는 자유로운 여행을 할 권리가 있다.

② 장애인 등 관광약자는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손상을 이유로 여행이나 관광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장애인 등 관광약자는 여행이나 관광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의사소통, 이동과 시설,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아래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장애인
2. 노인
3. 임산부
4. 영유아 동반인
5. 외국인
6. 기타 문화, 종교, 의료적 이유로 식이조절이 필요한 관광객, 부상당한 환자 등

제4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3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대상시설 및 설치기준)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및 수단
3.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관광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대상 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설비
- ② 대상 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2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별표2 기준을 준용하며, 시장이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순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대상시설 개선 및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장애인 위원을 위촉할 때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순천시 관광업무담당과장, 노인장애인업무담당과장, 도시계획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2. 장애인 등 관광약자, 관광약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사회복지, 관광, 교통, 건축, 시설, 안전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순천시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간사가 된다.

제9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위

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및 모니터링
2.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3.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및 환경개선
4.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5.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마케팅
6. 관광환경 조성 협력 및 네트워크 사업
7. 사업시행 전 관광약자 명예감독관 선임
8.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29호
----------	--------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 제출일시 : 2019. 3. 21.

1. 제안이유

- 투자기업의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로 변경
- 시와 투자협약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제3조)
- 기금 지원대상 투자규모 완화(제3조)
 - 기 업 : 투자 20억원 또는 고용 20인 이상 ⇒ 10억원 또는 10인
 - 연구소 : 투자 10억원 또는 고용 10인 이상 ⇒ 10억원 또는 5인
- 신규투자 및 신·증설 기업 지원대상 포함(제5조)
- 고용보조금 지급 기준 완화(제5조)
 - 신규채용 20명 초과 1인당 월 50만원 범위 내 6개월 지원
⇒ 신규채용 10명 초과 1인당 월 50만원 범위 내 6개월 지원
- 산자부 및 전라남도의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지급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 지급 근거 마련 및 동일항목 중복 지급 제한(제6조)
- 보조금 지급 신청 기한 연장 : 원인 발생 후 6개월 ⇒ 1년 이상(제7조)
 - 입지보조금 : 부지매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 시설보조금 : 건축물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건물임대보조금 : 임대계약 후 1년 이내
 -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은 1년 이내

- 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 참여 비율 및 특정성별 제한 비율 규정 신설(제8조)
 - 기금운용 전문가의 1/3이상 참여
 -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 제한
- 보조금 지원받은 후 1년 이내 당초 목적대로 추진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의 반환(제14조) ⇒ 2년 이내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 있음

의견제출	주요내용	검토의견
여성가족과	•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에 치우치지 아니하여야한다는 조항을 삽입 건의	반영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2. 22. ~ 2019. 3. 14.)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2. 28.(여성가족과-413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2. 21.(기획예산실-217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2. 21.(순천시 공고 제2019-358호)

순천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순천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를 “순천시 투자 유치 촉진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의 지원대상은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본문 중 “20억원”을 “10억원”으로, “20명 이상인 국내기업으로써 다른 시·군·구에서 우리시로 이전 하고자 하는 기업과 신규 투자기업인 경우”를 “10명 이상인 국내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0명”을 “5명”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장시설을 신·증설 또는 수선하거나 시로 이전하는 경우에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제5조제5항제2호 중 “20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범위 내에서 시설보조금,”을 “범위 내에서”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지원한도”를 “지원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또는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보조금의 동일항목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7조제1항 중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를 “지원 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입지보조금 : 부지매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2. 시설보조금 : 건축물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3. 건물임대보조금 : 임대계약 후 1년 이내
4.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5.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은 1년 이내

제8조제2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치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8조제3항제4호 중 “기타 외국인투자 유치”를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이나 투자유치”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1년 이내”를 “2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순천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의 지원대상은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국내투자는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국내기업으로써 다른 시·군·구에서 우리시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과 신규 투자기업인 경우. 다만, 수도권내 공장·본사·연구소를 우리시로 이전하는 경우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이에 우선 지원한다.	2. ----- 10억원 ----- 10명 이상인 국내기업. ----- ----- ----- ----- ----- ----- ----- ----- ----- -----.
3. 연구소는 국비지원 연구 기반 구축을 위한 총사업비 중 자기 부담 투자금액 1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본사·분원·센터로써 신규투자인 경우	3. ----- ----- ----- ----- 5명 ----- -----

② (생 략)

제5조(투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2조 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제 활성화 유발산업체”와 “고용극대화산업체”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 및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1. ~ 4. (생 략)

5.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5조의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별도로 지원 할 수 있다.

6.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시장은 제3조의 조건을 갖춘 국내자본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조업과 대고객 서비스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 및 비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신규 투자기업의 시설보조금 및 이전보조금은 시설비에 한하여 지원하되,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이 경우 시설보조금은 증설, 수선에 한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투자에 대한 지원)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
제5항-----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장시설을 신·증설 또는 수선하거나 시로 이전하는 경우에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2. 고용보조금은 신규채용 상시고
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에 초과인원 1인당 월50만원 범
위안에서 6개월간 기업당 5억원
까지 지원 (이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신규고용 한 경우도
해당된다)

3. (생략)

4. 전년도 지방세(시세) 실제 납부
액 범위 내에서 시설보조금, 컨설
팅보조금, 특허출원, 상표등록, I
SO인증, 의장등록 등 이와 유사
한 보조금으로 3년간 지원. 이 경
우 시설보조금은 증설, 수선에 한
한다.

⑥ 제3조 제2항의 투자규모 및 제
5조 제2항 및 제3항의 지원규정에
불구하고 해룡산업단지의 목적에
맞는 업종이 입주할 경우에는 임
대 금액의 100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⑦ ~ ⑨ (생략)

⑩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

2. -----
----- 10명-----

3. (현행과 같음)

4. -----
-- 범위 내에서 -----

-----.

<후단 삭제>

<삭제>

⑦ ~ ⑨ (현행과 같음)

<삭제>

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신·증설 투자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 할 수 없다.

제6조(지원한도 및 시기) ① 관계 법률이나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각종 시책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한 것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지원방법) ① 모든 지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거 지원결정 하 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6조(지원범위 및 시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또는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보조금의 동일항목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방법) ① -----

-- 지원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 : 부지매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2. 시설보조금 : 건축물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3. 건물임대보조금 : 임대계약 후 1년 이내
4.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 공장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신 설>

②·③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순천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중 자치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 설>

1. (생 략)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이나 투자유치 및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공인회계사·대학교수

3. 순천광양상공회의소 사무국장

5.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은 1년 이내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1. 자치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2. (현행 제1호와 같음)

<삭 제>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4. 기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④ ~ ⑥ (생략)

제14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생략)

2.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1년 이내에 당초 목적대로 사업추진을 하지 않을 경우

3. ~ 6. (생략)

② (생략)

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이나 투자유치-----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 2년 이내

3.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30호
----------	--------

○ 제출자 : 순 천 시 장

○ 제출일시 : 2019. 3. 21.

1. 개정이유

- 순천사랑상품권 사용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할인율 확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조항을 개정·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순천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제11조제1항 개정)
 - 권면 금액의 2%(설·추석명절 5%) → 5%(설·추석명절 10%)
- 순천사랑상품권 활성화 유공자 포상 등(제12조제4항, 제5항 신설)
 - 순천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공이 있는 시민, 관련단체, 소상공인, 공무원 등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2. 28 ~ 3. 20)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3. 8.(여성가족과-4809)
- 예산부서 심의필 :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3. 4 (기획예산실-258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2. 28 (순천시 공고 제2019-429호)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100분의 2(설·추석 명절 전후 시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100분의 5)” 를 “100분의 5(설·추석 명절 전후 시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100분의 10)” 로 한다.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판로촉진과 홍보지원 등) ④ 시장은 순천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 시민단체, 순천사랑상품권 관련 유관기관·단체 및 소상공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할인 및 수수료)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u>100분의 2</u> (설·추석명절 전후 시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u>100분의 5</u>)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개별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할인 및 수수료) ① ----- ----- <u>100분의 5</u> ----- ----- <u>100분의 10</u>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판로촉진과 홍보지원 등) ① (생략)	제12조(판로촉진과 홍보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시장은 순천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 시민단체, 순천사랑상품권 관련 유관기관·단체 및 소상공인,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
<신설>	⑤ 제4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 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제11조제1항

- 시장은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5 (설·추석명절 전후 시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관련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순천사랑상품권 권면 금액의 할인율에 따른 할인 금액을 분기별로 판매대행 금융기관에 지급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총 비용(a-b)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세입(a)	0	0	0	0	0	0
세출(b)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 계	5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국비		80,000				
도비						
시비	500,000	2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자체수입						
지방채						
기금						
특별회계						
기타(민자 등)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

○ 산 출 액 : 100,000천원

○ 산출근거(2019년)

• 순천사랑상품권 판매 할인

- 판매예상액 : 2,000,000천원

- 할 인 율 : 5%

- 산 출 식 : 2,000,000천원 $\times$ 0.05

※ 2019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할인율로 판매예상액의 4% 국비지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일자리경제국 지역경제과 과장 강이구 (☎ 749-5487)

팀장 서인근 (☎ 749-5733)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3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3. 21.

1. 개정이유

-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조금 조항 신설과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등에 관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실시를 위한 조항 신설
 - 제5조(소상공인의 날) 3항
-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연합회 운영 보조금 지원 조항 신설
 - 제11조(보조금)
-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종합상담을 위하여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 제12조(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소상공인의 날), 제8조(소상공인 창업지원),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제12조(폐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제25조의 2(보조금)지방세법

5. 관련부서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2. 22 ~ 3. 14)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2. 20.(여성가족과-3469)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2. 21 (기획예산실-2150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2. 22 (순천시 공고 제2019-342호)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보조금) ①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연합회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센터는 시장이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지원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원스톱 종합 상담 기능 수행
2. 창업세미나, 설명회 등 소상공인 교육 실시
3. 지역 상권 조사, 분석
4. 소상공인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애로상담 및 지원사업 정보 제공
5. 소상공인 지원기관간 연계 통합네트워크 구축
6. 소상공인 지원 관련 중개기능 수행(전문상담사, 퇴직인력 경영자문단 등 활용)
7. 소상공인 홍보 지원(홍보물 제작 관련 장비 및 공간 지원)
8. 지원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지도
9. 기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소상공인의 날) ①~② (생략) <u><신 설></u>	제5조(소상공인의 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순천시는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11조(보조금) ①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합회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u><신 설></u>	제12조(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시장이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지원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원스톱 종합 상담 기능 수행 2. 창업세미나, 설명회 등 소상공인 교육 실시 3. 지역 상권 조사, 분석 4. 소상공인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애로상담 및 지원사업 정보 제공 5. 소상공인 지원기관간 연계 통합네트워크 구축

현행	개정안
	<u>6. 소상공인 지원 관련 중개기능 수행 (전문상담사, 퇴직인력 경영자문단 등 활용)</u> <u>7. 소상공인 홍보 지원(홍보물 제작 관련 장비 및 공간 지원)</u> <u>8. 지원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지도</u> <u>9. 기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u>
<u>제11조 ~ 제18조 (생략)</u>	<u>제13조 ~ 제20조 (현행 11조에서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u>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 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소상공인지원조례 개정(안) 제12조

- 순천시장은 제12조 3항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관련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 일반경비, 사업비 등을 사업 완료 후 지급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총 비용(a-b)	-895,000	-95,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세입(a)	0	0	0	0	0	0
세출(b)	895,000	95,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 계	895,000	95,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국비						
도비						
시비	895,000	95,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자체수입						
지방채						
기금						
특별회계						
기타(민자 등)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

○ 산 출 액 : 94,796천원

○ 산출근거(2019년)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인건비 : 36,646천원(센터장 5급상당, 팀원 8급상당)

-센터운영비 : 20,650천원(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시 설 비 : 30,000천원(센터 리모델링)

-자산취득비 : 7,500천원(센터 비품)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일자리경제국 지역경제과 과장 강이구 (☎ 749-5487)

팀장 서인근 (☎ 749-5733)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3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3. 21.

1. 개정이유

-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육성 및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순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 조직 운영→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2.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조직 용어 및 개념 정의(안 제2조제2호 다목 및 바목, 제3호부터 제6호)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안 제16조)
 - 지원센터 운영 근거 및 기능
 - 운영방법 및 경비 지원 등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2. 15. ~ 3. 7.)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2. 11.(여성가족과-2689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2. 11.(기획예산실-1600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2. 15.(순천시 공고 제2019-272호)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수정하고, 제2조제2호바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같은 호 사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 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및 정책연구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육성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 간 및 민간네트워크의 협력 지원
4.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지역 및 광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5.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회계, 마케팅, 판로개척, 경영 등 지원
6. 사회적경제 조직 및 시민교육·홍보 지원
7. 사회적경제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8. 그 밖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

③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 3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순천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말한다.	2. ----- ----- ----- ----- -----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u>행정자치부에서</u> 지정한 “마을기업” 또는 전라남도나 순천시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다. ----- ----- ----- ----- ----- <u>행정안전부</u> ----- -----
라.~ 마. (생략)	라.~ 마. (현행과 같음)
바.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u>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u> 을 지원하는 “ <u>중간지원조직</u> ”	<삭 제>
사. (생략)	바. (현행 사목과 같음)
<신설>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3. ~ 6. (생략)	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와 같음)

현행	개정안
제16조(사회적경제 중간 지원 조직 운영)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 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중간 지원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은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에 따른 순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수행한다.	제1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 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및 정책연구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육성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 간 및 민간네트워크의 협력 지원 4.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지역 및 광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5.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회계, 마케팅, 판로개척, 경영등 지원 6. 사회적경제 조직 및 시민교육·홍보 지원 7. 사회적경제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8. 그 밖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 ③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 3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3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3. 21.

1. 개정이유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7)」에 따라 귀농인으로 한정된 조례 내용을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내용으로 전체수정
- 귀농·귀촌에 필요한 지원, 교육훈련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근거 명시

2. 주요내용

- 정의 규정(제2조)
- 귀농·귀촌지원 위원회 설치(제3조)
-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제12조)

3. 개정조례안 : 별도첨부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2. 14. ~ 2019. 3. 5)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2. 11.(여성가족과- 273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2. 14.(기획예산실 - 183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2. 14.(순천시 공고 제2019- 284호)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란 농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순천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으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원”이란 함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순천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영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귀농·귀촌지원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귀농·귀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귀농·귀촌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3.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농업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1명
2. 순천시 농업관련 기관 임·직원
3. 여성농업인 또는 농업분야 여성 전문가
4. 순천시 귀농귀촌협의회 회원
5. 그 밖에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농귀촌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하거나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사업
2. 귀농·귀촌교육, 영농교육 등
3. 지역주민과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4. 귀농·귀촌 협의회 지원
5. 귀농·귀촌 상담사 운영
6.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등
7. 그 밖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

제12조(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귀농·귀촌에 필요한

지원, 교육훈련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귀농귀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 및 귀촌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 등 영 제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구축 및 통계 생산 사업
3. 도시민 유치지원,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등 시책사업
4.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교육 등 지원사업
5. 귀농·귀촌으로 정착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6. 귀농·귀촌 동아리 및 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7.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융합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지정 취소) 시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각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고의로 검사를 방해한 경우 등

제15조(귀농·귀촌인 사후관리) ① 시장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귀농·귀촌인 에게 지원하는 사업비가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6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천시 귀농인 조례」에 따라 위촉된 순천시 귀농인 지원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순천시 귀농·귀촌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